

	기금운용심의회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8. 10. 1
		최종개정일자	2020. 8. 6
		담당부서	기획산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사립학교법」 제32조의3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, 그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「사립학교법」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과학대학교에 기금운용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기능)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매 회계연도 3월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<개정 2020.8.6.>
2.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
3.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·운용과 관련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심의회의 구성)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교직원 대표 2명<신설 2020.8.6.>
2. 학생대표 1명<신설 2020.8.6.>
3. 동문대표 1명<신설 2020.8.6.>
4.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명<신설 2020.8.6.>
5. 대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회계 관련 외부 전문가 1명<신설 2020.8.6.>

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

③ 심의회의 위원은 교원, 직원, 학생, 외부전문가,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제 14조의5 제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④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,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
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7일(긴급한 경우 3일)전 까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공문으로 공지하고 각 위원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통지

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8.6.>

⑤ 위원회는 회의 종결 후 회의록을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대하고 이 이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회의록에 포함되어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2.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3.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

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는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,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의 권리와 의무) ①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.

② 심의회의 위원은 기금의 투자정보 등 위원으로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관계 부서의 협조) ① 심의회의는 제3조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 1항에 따라 심의회의의 요구를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당 및 여비)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교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간사) ① 심의회의에 심의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기획산학처 직원 중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.<개정 2020.8.6.>

제11조(기타)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8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0년 8월 6일 부터 시행한다.